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2. 6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문구를 수정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관련 문구 보완(안 제29조제1항제2호 개정)

학교장이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의 보호자에게 다음 학년도 출석을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학생을 계속하여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2호 중 “학생”을 “학생 및 보호자가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학교장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학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유예자의 학적관리 등)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. 1. (생 략) 2.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<u>학생</u>	제29조(유예자의 학적관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<u>학생 및 보호자가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학교장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학생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27